

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(주요업무심의)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지역전산본부의 주요업무는 도정 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받는다.

③지역전산본부 주요업무 심의조정시의 위원회에는 전산관련 전문가 및 교수중 3인 이내의 위촉위원을 둔다.

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11조 <u>(전산화추진위원회) ①지역전산</u> <u>본부의 주요업무를 심의 조정하기</u> <u>위하여 도에 전산화추진위원회(이하</u> <u>'위원회'라한다)를 둔다</u></p> <p>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4조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 2. 제13조 제1항에 의한 용역개발 3. 이용기술과 전자계산조직 도입 4.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사항 <p>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련업무 관련업무 실·국장(6인이내)과 교수 및 전문가(3인이내)중 위원장이 위촉 한 자로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관 이 된다.</p> <p>④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 <u>(주요업무심의) ①지역전산본부의</u> <u>주요업무는 도정조정위원회(이하</u> <u>'위원회'라한다)의 심의를 받는다.</u></p> <p>②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2. 3. 4. <p>③<u>지역전산본부 주요업무 심의조정시의</u> <u>위원회에는 전산관련 전문가 및 교수중</u> <u>3인이내의 위촉위원을 둔다.</u>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